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령안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)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성
2.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
3. 그 밖에 시행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82조제1항 중 “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”을 “영 제64조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”으로, “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”를 “서류의 사본 및 인·허가 등을 받은 경우 그 인·허가서 사본을 말한다”로 한다.

제114조의 제목 “(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)”을 “(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 신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

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영 제104조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, 지도·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【별지 제5호서식】 지형·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양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지형·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								
통보기관 : 00(시군구)								
일련 번호	변동 지물	변동 내용	용도 (종류)	명칭	규모	위치	준공일 자	관리기관 (개인, 도로관리청 등)
						건축물주소(지번 또는 도로명) / 도로공사구간		
1								
2								
3								
세부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								
[작성방법] - 변동지물이 건축물, 도로인 경우에는 최근 준공된 건축물 및 도로에 한하여 기재합니다. - 건축물 증축은 건축물의 평면 모양이 변경된 경우, 도로 개량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지물에 포함됩니다. - 관리기관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“개인” 이라고 기재합니다. - 변동지물이 주기(명칭)인 경우에는 “용도”, “규모”, “관리기관” 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 [제출자료] - 건축물 : 사용승인서 사본, 대지의 경계를 포함하는 평면도(dwg 등) - 도로 : 공사의 개요, 위치도(축척 1/5,000 이상 지형도에 표시) - 주기(명칭) : 고시자료, 인가서류 등 변경 근거자료 ※ 건축물, 도로 공사를 위해 공공측량으로 작성한 측량성과(설계평면도 또는 준공도면(dwg 등))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
297mm×210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							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2조의2(측량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) ①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시행계획의 이행 충실성 2.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 3. 그 밖에 시행계획의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, 법인,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.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방법·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제82조(등록전환 신청) ① 영 제64조제3항에 따라 토지의 등록전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<u>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.</u>	제82조(등록전환 신청) ① 영 제64조제3항에서 “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”란 ----- ----- --- <u>서류의 사본 및 인·허가 등</u> <u>을 받은 경우 그 인·허가서 사</u>

② (생 략) 제114조(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의 지정 신청) (생 략) <신 설>	<u>본을 말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 제114조(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 의 지정 신청 등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영 제104조에 따른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의 지정절차, 지 도·감독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 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<u>고시한다.</u>
---	---

【별지 제5호서식】

현 행														개 정 (안)													
지형·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00(시군구)														지형·지물의 변동에 관한 통보서 통보기관 : 00(시군구)													
변 동 여 부	관계기관			변 동 유 형	공 사 명	대상지역 (위치)			규모	변경사 항		공사기 간		공사감 독		좌 표 계	일 련 변 호	변 동 지 물	변 동 내 용	용 도 (종 류)	명 칭	규 모	위 치		준 공 일 자	관 리 기 관 (개 인, 도 로 관 리 청 등)	
	광 역 시 도 및 국 토 청	계 획 기 관	감 독 기 관			주 소 (지 번)	공 사 시 점	공 사 종 점		연 장 (km) 또는 면적 (㎡)	변 경 전	변 경 후	착 공 일	준 공 일	부 서 명								담 당 자 및 연 락 처	건 축 물 주 소(지 번 또는 도 로 명)			
																								/ 도로공사구간			
세부 작성방법 및 제출자료																											
[작성방법] 1. 변동지물이 건축물, 도로인 경우에는 최근 준공된 건축물 및 도로에 한하여 기재합니다. - 건축물 증축은 건축물의 평면 모양이 변경된 경우, 도로 개량은 도로의 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지물에 포함됩니다. - 관리기관이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“개인” 이라고 기재합니다. 2. 변동지물이 주기(명칭)인 경우에는 “용도”, “규모”, “관리기관” 은 기재하지 않습니다. [제출자료] 1. 건축물 : 사용승인서 사본, 대지의 경계를 포함하는 평면도(dwg 등) 2. 도로 : 공사의 개요, 위치도(축척 1/5,000 이상 지형도에 표시) 3. 주기(명칭) : 고시자료, 인가서류 등 변경 근거자료 ※ 건축물, 도로 공사를 위해 공공측량으로 작성한 측량성과(설계평면도 또는 준공도면(dwg 등))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
297mm×210mm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																									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1-3481